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21나205194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4889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21나20519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30 선고 2017가단1700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조합

변론종결 2022. 4. 5.

판결선고 2022. 5. 3.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30. 선고 2017가단1700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988,587원 및 그 중 33,071,892원에 대하여는 2013. 1. 3.부터, 32,916,695원에 대하여는 2018. 11. 1.부터 각 값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이 확정되었고 담보제공이 없었음에도 변론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론이 진행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오성우, 판사 박이규, 판사 황현찬